



: 2020-07-22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7도5797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환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01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상의 '독립된 저작물',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 2020-07-22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_____

주 심 대법관 권순일 _____

 대법관 이기택 _____

 대법관 김선수 _____